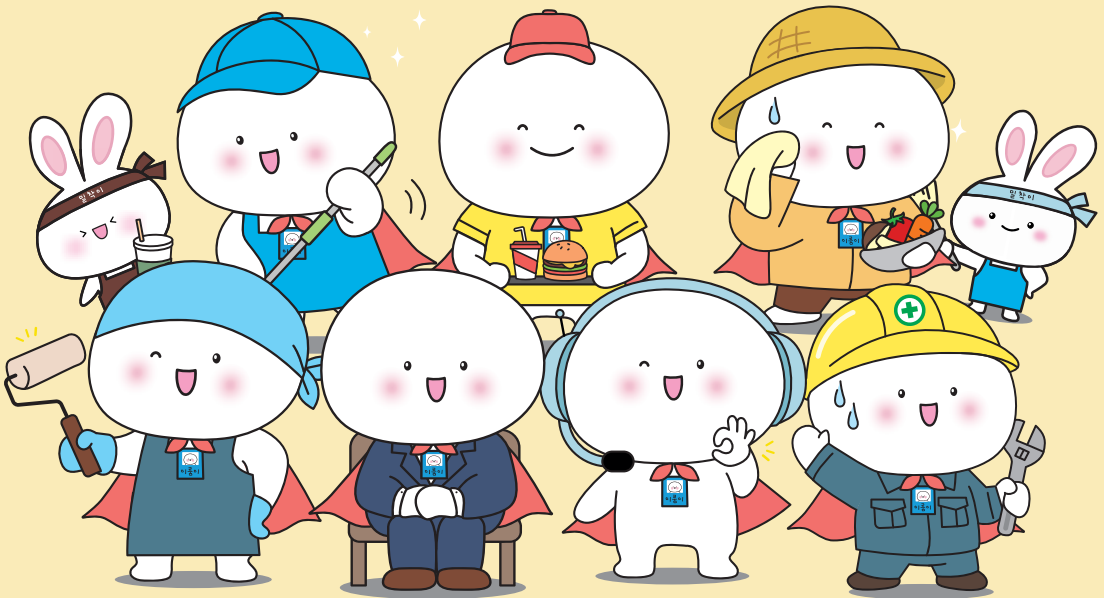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를 위한 **취업이룸카드**



변화의 기회,
새로운 내일을 위한
튼튼한 지원



2026년 당신의 시작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함께합니다.



신청접수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방문
(<http://www.work.go.kr>)

참여조건

I 유형

- 15 ~ 69세 :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15 ~ 34세 :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 다만,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 ~ 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II 유형

- 특정 계층 : 소득무관
 - 15 ~ 34세 : 소득무관
 - 35 ~ 69세 : 중위소득 100%이하
- (공통)
재산 무관

* (15 ~ 34세 청년)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 구직방향 설정 및 취업전략 수립
 - **직업능력 향상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 등 연계
 - **취업알선** |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 구인정보 제공 / 동행 면접 등
- * 취업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및 II 유형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채용 및 고용유지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자세한 지원요건은 고용24 참조)

소득지원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x 6개월
 -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 (부양가족) 미성년자(18세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15 ~ 25만원
-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원
(참여기관 방문하여 취업상담·알선참여시 월 1회 2만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심화교육을 수료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및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국민취업 연계수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 지급

(II 유형)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1개월 이상)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기업)에 취업,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월 20만원씩 6개월분의 훈련참여지원수당과 40만원의 성공수당 지급(소득 무관)

Contents

참여자 기본 안내



고용24 활용하기	4
참여자의 기본 의무	6
들어가기	7
상담일정 및 과제	8
직업심리검사	9
취업활동계획서 (I유형)	10
취업활동비용·취업활동계획서 (II유형)	11

국민취업지원제도



계좌입금(압류방지통장)	13
구직촉진수당 (I유형)	14
수급시 유의사항 (I유형)	15
소득발생 및 부정수급	19
취업지원 이관 및 유예	22
취업지원 종료 및 재신청	23
취·창업성공수당	25
구직촉진수당(I유형) 및 참여장려수당(II유형) 온라인 신청	27

유용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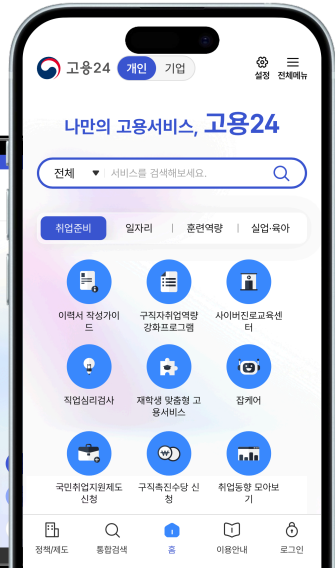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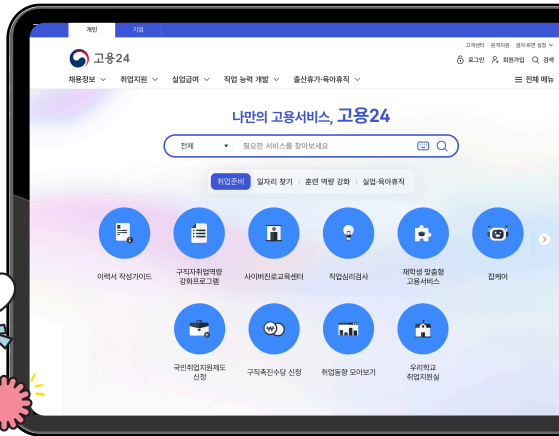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36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미래내일 일경험프로그램	37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중장년 경력지원제	38
고용촉진장려금	39
직업지도프로그램 및 사이버진로교육	40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찾기 및 발급	43
직업훈련 유의사항	45
기타 연계프로그램	46
고용24 입사지원	47
고용·복지서비스 및 취업지원 관련 사이트	52

고용24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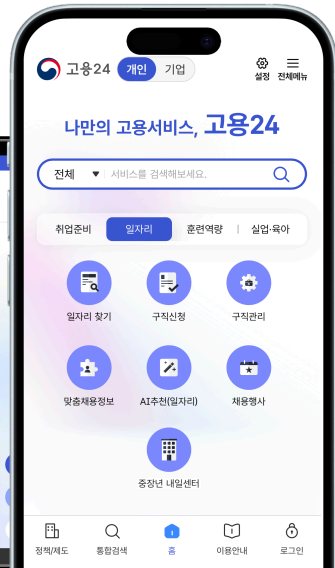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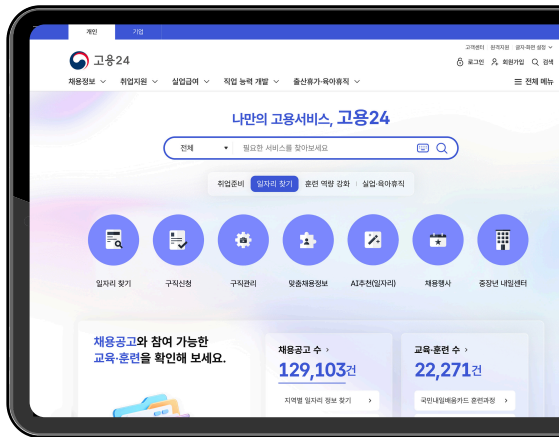
취업준비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 국민취업지원제도
- 직업심리검사
- 구직촉진수당 신청
- 잡케어



일자리(찾기)

- 일자리 찾기
- 맞춤 채용정보
- 구직신청
- 중장년 내일센터
- 구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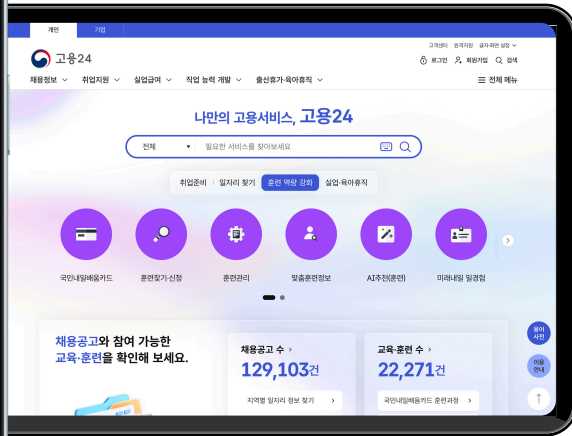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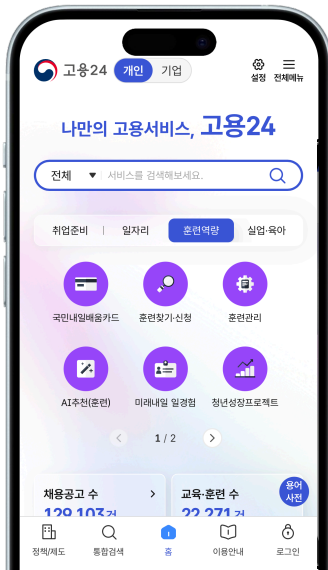


고용24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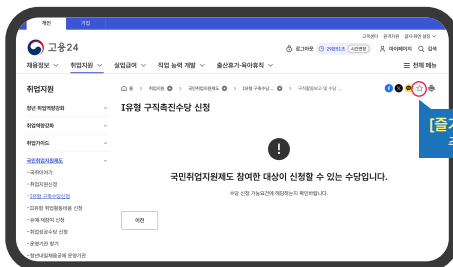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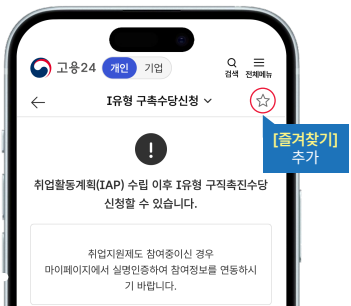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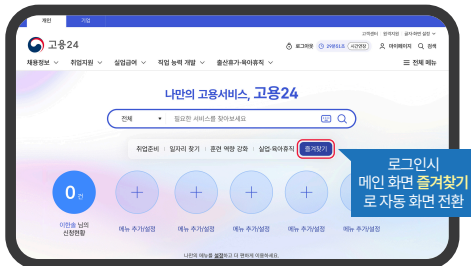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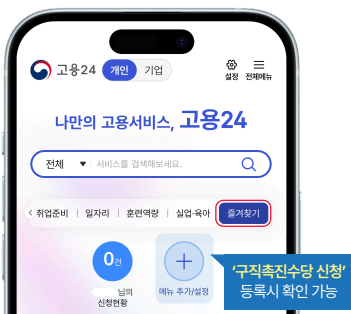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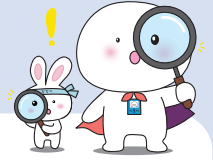
훈련역량(강화)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찾기·신청
- 훈련관리
- 미래내일 일경험



즐거찾기 등록(로그인시 가능)





참여자의 기본 의무



참여자는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구직활동을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제재
-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 조치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해 소득 및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소득* (근로+사업+이전+재산+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19쪽 참고



참여자는 취·창업 및 변동사항 발생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이후 취·창업을 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신고

꼭! 기억해 주세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고용서비스 기관은 참여자에게 소득 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고용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님께

- ✔ **상담사와 함께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하게 참여해 주세요.**

- ✔ **정해진 상담시간은 정확히 지켜주세요. [예약제로 운영]**
 - * 상담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3일 전 미리 알려주세요.

- ✔ **상담사가 제시한 ‘취업에 필요한 과제’는 꼭 수행해 주세요.**

- ✔ **제도 참여기간 중 특이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담당자와 상의해 주세요.**
 - * 예:직업훈련·교육 및 기타 타사업 참여, 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 변경 등

- ✔ **참여기간 중 아래와 같은 경우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신청, 취득 또는 상실하게 되는 경우
(생계수급, 의료수급, 주거수급, 자활근로 등 / *생계수급과 구직촉진수당 중복 불가)
 - 직접(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 취·창업한 경우 (노무제공자-프리랜서 포함)
 -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

▶ 담당자명

▶ 청구번호

▶ 연 락 처

▶ 팩 스

▶ 이 메 일

지원서비스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 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창업 지원 연계 등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금융 프로그램 연계 	
	I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가족수당 * 미성년자(18세이하),고령자(70세 이상),중증 장애인 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생계 지원	II유형	참여수당	참여장려수당
		15~25만원(1회)	1회 2만원(5회)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무시 50만원, 12개월 근무시 100만원 지원(총150만원) * II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 취업조건 만족시 지급 가능 	

상담일정 및 과제

상담일자	방문시간	과제 및 전달사항 등

프로그램명(집단, 단기, 취업특강 등)	일자 및 시간, 장소

직업심리검사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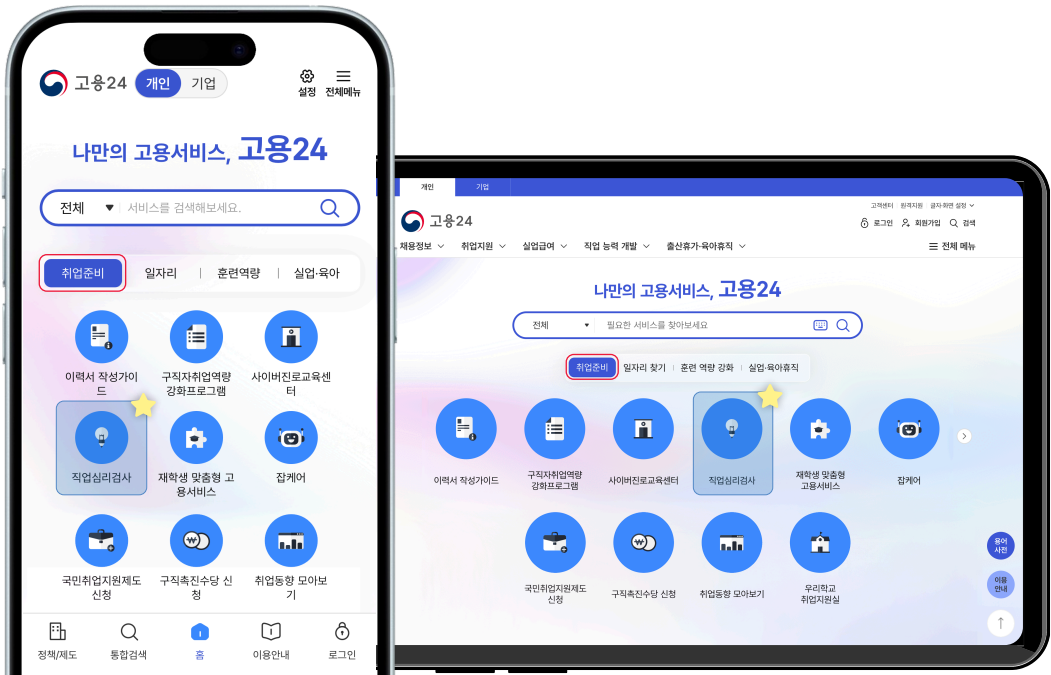
검사명	검사내용	소요시간
직업선호도검사 (S형 / L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 흥미유형에 따른 적합 직업 추천 S형 : 흥미검사 L형 :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검사 (핸드폰-PC 버전으로 가능) 	S형 : 25분 L형 : 60분
구직준비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동기, 구직기술 등 구직활동 특성 측정 효과적인 구직활동에 유용한 정보 제공 	20분
직업가치관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가치를 9개 가치요인 기준으로 파악 직업가치관에 적합한 직업분야 안내 	20분

☑ 메인화면(모바일,PC동일)

- ▶ 취업준비
- ▶ 직업심리검사

☑ 취업지원-취업가이드/취업준비

- ▶ 직업심리검사
- ▶ 성인-검사종류 선택
- ▶ 검사하기



취업활동계획서

수급인정일자		IAP수립일자	
수당지급기간	~	집중구직활동기간	~
취업지원기간	~	사후관리기간	~

- ▶ 지정일(신청일)에 꼭! 제출 / IAP수립 후 3~5개월차 중 최소 1회 대면상담 필수 (구직활동 최소 3개 이상)
- ▶ 계획된 활동을 모두 이행할 경우 수당 지급 * 변경 : 해당 지급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협의하여 변경
- ▶ 집중구직활동기간(취업노력기간) 3개월 필수(의무기간)

직종(직무)	1	2	3
--------	---	---	---

월 지급예정액	원
---------	---

회차	지원대상기간(지급주기)	지정일(신청일)
<input type="checkbox"/> 1회차	~	IAP수립일:
<input type="checkbox"/> 2회차	~	
	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3회차	~	
	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4회차	~	
	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5회차	~	
	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6회차	~	
	이행계획	

취업활동 비용



참여수당

II유형 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성실히 참여, 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자에게 실비보상적 수당으로써 지원하는 금액

구분	기본지급액	추가지급액		합계
2유형	15만원	대면 취업특강·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2회	[특정계층] 5만원	[특정계층] 20만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상담 2회	[청년·중장년층]	[청년·중장년층]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중 기업탐방(2일 이하)	3만원	18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특정계층] 10만원	[특정계층] 25만원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중 기업탐방(3일 이상)	[청년·중장년층] 5만원	[청년·중장년층] 20만원

주요 프로그램

구분	대상	프로그램명	일수	시간	
집단 상담	성인	성취프로그램	4	24	
		내일또다시 (2종) - 소그룹	3	12	
	50~60세	신호탄 - 신중년 재취업설계	3	18	
	심리적 취약계층	취업희망 프로그램	4	24	
	취업 취약계층	마음톡톡심플 (비대면) - 소그룹	3	12	
	청년층	CAP@ (캐파) -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4	24	
		청년취업 GYM - 청년층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모듈형)	3	18	
단기 집단상담	구직급여 수급자 등	취업드림 - 입사지원서 준비 / 이력서&자소서 작성법 이해 및 실습, 생성형AI 활용과 실습	1	각 3	
취업 특강	구직급여 수급자 등	고령층	내마음 챙기기 등	1	각 2
		중고령층	이력서 작성과 이미지메이킹,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대화법, 내 손안의 취업비서 고용24 모바일 활용법, 다시 시작하는 신용관리 등		
		중년층	시가 도와주는 스마트한 취업준비, 정신건강 살펴보기, 4050 트렌디한 이력서 자소서 작성법, 중년의 재도전 면접마스터키 등		
		청년층	일타강사가 알려주는 입사서류 작성꿀팁, 작은 경험에서 직무적성 캐내기 등		
		기타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한 소통법, 전지적 면접관 시점 등		

조건부수급자 예외규정

자치단체에서 의뢰된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자에 대해서는 1일 2만원 지급(최대 6만원) (1일 2회 이상 출석한 경우에도 1일 최대 지급한도는 2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간 중 진단평가 상담 등을 위해 출석한 날에 대해 교통비 및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 취업활동계획 수립일에 신청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자치단체 이관자)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인한 취업장애요인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자치단체로 재이관 (사유는 ①취업의사 없음, ②개인의 건강상 이유, ③가구여건, ④기타)

2유형 취업활동계획서

수급인정일자 IAP수립일자

취업지원기간 ~

직종(직무)	1 <input type="text"/>	2 <input type="text"/>	3 <input type="text"/>
--------	------------------------	------------------------	------------------------



집중구직활동기간(취업노력기간) 상담일정 및 과제

집중구직활동기간 ~

3개월 필수(의무기간) : 구인정보 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입사지원 필수

상담일자	방문시간	기간	상담일자	과제



참여장려수당

II유형 수급자 중 집중 구직활동기간(취업노력기간)에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 (최소 30분 이상)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급액 : 월 1회, 1회 2만원(최대 5회, 총 10만원 한도 / 대면상담만 인정)
- 신청 및 지급 : 집중 구직활동기간 (취업노력기간) 3개월 종료 시 일괄 신청을 받아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지급횟수 1회)

계좌입금



원칙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입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통장)

신용불량 상태 등의 수급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는 압류 방지 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가능

-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지원금 등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사업도 함께 사용하므로 고용노동부 사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등 13개)에서 발급한 행복지킴이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는 추가 발급 없이 보유 통장 사용 가능

* '24년 8월까지 '구직촉진수당등'만 입금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전용통장인 '취업이룸통장' 운영 (취업이룸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는 계속하여 보유 계좌로 '구직촉진수당등' 수급 가능)

검사명	소요시간
상 품 명	「행복지킴이 통장」
통장확인	통장 첫 페이지의 “행복지킴이, 압류방지 전용통장” 문구로 확인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통장의 첫 페이지(인감이 날인된 면)에 “압류방지전용통장”이라는 문구 표시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 금융기관 (13개 기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아이엠뱅크(대구은행), 신협중앙은행
개설방법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예금주가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 제출
상품내용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취업성공수당 입금 가능 * 그 외 행복지킴이 통장 사용 타 정부지원금 입금은 가능하나, 은행이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제한

'25. 5. 23. 변경내역 적용

- '새마을금고' 압류방지통장 입금불가 (사용불가)

구직촉진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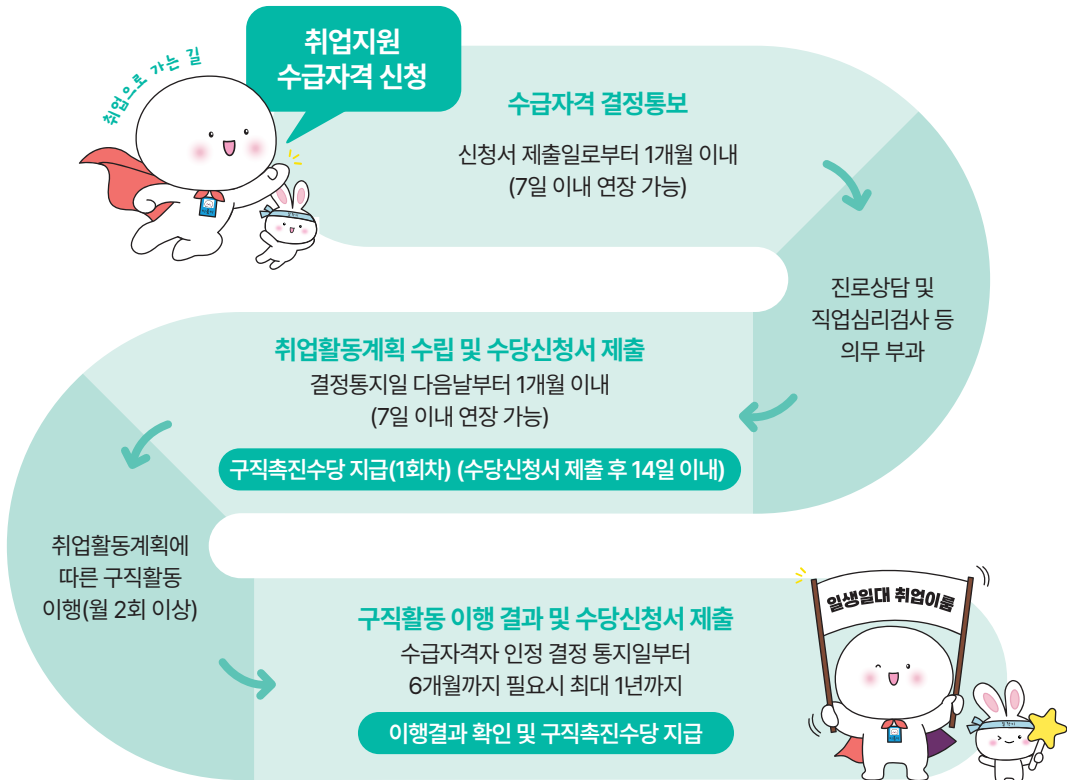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월60만원×6개월(최대 360만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 지급
 - ※ 부양가족 : 만18세이하, 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발급자)
 - ▶ 예정된 구직활동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최소 50%이상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50% 감액 지급,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간주.
 - ▶ 정해진 구직활동을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전액 부지급
 - ▶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횟수가 3회가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은 소멸
- 수급자의 상황이나 요청에 의해 12개월 이내에 월 60만원(기본수당)에 대해 50%인 30만원으로 분할 지급 받을 수 있음
-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 한도로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 기준금액-신고소득금액)
 - ※ 기준금액 : 1인 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2배 금액 중 큰 금액



지급 절차



수급시 유의사항-구직활동



취업활동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사유

- ▶ 수급자의 취업역량 등을 고려하여 수립했던 취업활동계획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담당자가 판단한 경우
- ▶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고 담당자가 합리적인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 * 개인적인 사유로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소급하여 프로그램 변경(예: 집단상담프로그램 → 취업특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변경시기

- ▶ (원칙) 해당 지급주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협의하여 변경 : 수당 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활동계획 변경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활동계획 변경 불가
- ▶ (예외)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입원 등)이나 외부 요인(훈련 중단, 참여 예정 프로그램 취소, 수급자의 과실 없는 일경험 중단 등)에 의하여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이라도 취업활동계획 변경으로 다른 구직활동을 지정하고 그 이행 여부에 따라서 구직 촉진수당 지급을 검토



구직활동 이행에 따른 지급기준(구직활동의무 이행 인정기준)

IAP에서 정한 구직활동(취업지원 또는 구직활동지원)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 고용·복지·금융 연계사업 참여

- ▶ 상담 1회 및 프로그램 수료를 구직활동 1개로 인정
- ▶ 참여 프로그램 형식과 내용이 2일 이상의 집단상담프로그램에 해당하면 구직활동 2개로 인정

✓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일경험 참여' (청년,중장년 등)

- ▶ 지급 단위기간 내 참여 예정일수가 10일 이상 → 구직활동 2개로 인정 (80%이상 참여)
- ▶ 지급 단위기간 내 참여 예정일수가 10일 미만 → 구직활동 1개로 인정 (80%이상 참여)
-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중 프로젝트형과 같이 참여일수가 확인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활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의무 부여 후 이행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 가능

✓ 자영업 준비활동시

창업을 위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창업준비 활동을 한 경우 구직 활동으로 인정하되, 수급자는 자영업 준비활동 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행으로 처리

* 반복적으로 동일한 준비활동만을 이행하는 경우 제한(불이행처리)

수급시 유의사항-구직활동

✓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 2일 이상의 집단 상담프로그램 수료 시 구직활동 2개로 인정
- ▶ 그 외 단기 집단상담 및 취업 특강은 각각 구직활동 1개로 인정 (단, 취업특강은 전체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2회만 인정)
- ※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수료), 심리상담, 취업진로상담 등 포함
- ※ 집단상담프로그램이 구직촉진수당 2회기 이상의 지급주기에 걸쳐 운영되는 경우 수료일자가 포함된 지급주기의 구직활동으로 인정
- ※ 취업활동계획 재진단 등 필수 대면상담 참여시 구직활동 1개로 인정

✓ 입사지원 등 직접적 구직활동시

- ▶ 희망 취업 조건과 맞는, 구인이 있는 사업장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경우, 이행한 횟수별로 구직활동 1회 인정
- ※ 단, 취업 의사 없이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불인정
 - ✓ 형식적 구직활동 : 취업의사 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부지급 대상
 - 1)마감된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2)단순 명함 제출, 3)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미취업, 4)전화로만 구직활동, 5)근로조건 변동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6)본인의 취업희망 직종과 무관한 직종에 입사 지원하는 경우 등
- ※ 면접 없는 이력서 제출이 3회 이상인 구직활동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5회차부터 가급적 취업알선 또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인정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기타 구직활동시

- ▶ 구직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 : 구직활동 1회로 인정
- ※ 자격증 시험에 탈락하고 다른 날 동일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각 구직활동으로 인정
- ▶ 담당자가 부여한 과제 수료시 : 과제별 구직활동 1회로 인정
- ▶ 전문성 향상 등
 - 노무제공자, 영세자영업자가 해당 사업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각종 시설 장비 기계·차량 유지 보수, 사업제안서 제출, 포트폴리오 작성 제출, 면접·교육·시험 응시 등의 활동을 한 경우 각 행위별로 구직활동 1회로 인정
- ▶ 사회봉사활동
 - 노동시장 여건 상 구인업체 부족 등으로 고용정보 제공 및 직접적 구직활동이 어려워, 취업 희망 직종·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구직기술 향상 등 직업지도를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

수급시 유의사항-구직활동

✓ 직업훈련 참여

- ▶ 지급 단위기간 내 훈련 출석 예정일수가 10일 이상 → 구직활동 2개로 인정 (출석률80%이상)
- ▶ 지급 단위기간 내 훈련 출석 예정일수가 10일 미만 → 구직활동 1개로 인정 (출석률80%이상)
- ※ 미인정 훈련과정 및 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훈련(자비 부담 일반 학원 수강 등)은 훈련 일수가 10일 이상 +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이고 출결관리가 되는 과정에 한하여 인정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출석일수 및 출석률 인정기준 적용

-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시간으로 출석률 산정
- 지각·조퇴·외출로 인하여 1일 소정 훈련시간의 50% 미만을 수강한 경우 해당일자는 결석으로 처리
- 지급주기 중 지각·조퇴·외출 횟수의 합이 3회인 경우 1일 결석으로 처리
- 소정 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표3에 따른 출석 인정 기준 적용 가능(경조사, 휴가 등)
- 훈련개시일 이후 훈련생 등록기간에 중간 편입한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 개시일부터 훈련 등록 전일까지의 훈련일수는 소정 훈련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훈련기관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강된 경우, 폐강일 이전 훈련일수 대비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80% 이상 참여 여부를 확인

✓ 지급주기 중 수강 포기한 경우 미출석일은 결석으로 처리. 다만, 수강포기 사유가 취업인 경우 수강 포기일 이전 훈련 참여일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

※ 지급주기 중 임금근로자(주30시간 이상 근로), 노무제공자(월소득 250만원 이상)로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는 직업훈련 출석률과 무관하게 취(창)업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

✓ 지급주기 중에 2개 이상의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훈련 참여에 따른 출석률을 구분하여 적용

※ 다만, 출석률이 80% 미만인 과정이 있더라도 지급주기 중 참여한 전체 훈련과정의 소정 훈련일수를 기준으로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직업훈련 참여로 인한 구직활동은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

✓ 구글코리아 시 에센셜 교육

▶ 구직활동계획에 반영시 인증서 발급일 기준 구직활동 1개로 인정

✓ 8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으로 수료시 인증서 발급

- 시작동원리, 프롬프팅 기법 등, 총 학습시간 8시간 내외
- 5개 모듈(총 47개 영상, 16개 읽기자료, 5개 평가과제 등)로 구성
- 수료시 링크드인으로 연동하여 인증서 제공

수급시 유의사항-가족수당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 ▶ (원칙) 수급 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
- ▶ (분할지급) 수급자가 분할지급을 따로 신청한 경우, 수급자와 상담사가 협의, 총 지급액은 기본수당 360만원+가족수당 최대 2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지급액은 월 지급액의 50%로 결정



가족수당 지급 대상

- ▶ 수급자격 심사시 확정된 가구원 중 **미성년자(18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 수급자격 심사시 가구원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취업지원 신청일 이후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 (사실혼 포함)가 출산한 **신생아**



가족수당 지급시 유의사항

- ▶ 중증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인 경우 1인당 20만원 지원
- ▶ 1명의 부양가족 몫으로 **2인 이상 신청인 동시 수급 불가** 및 가족수당 수급 **종료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타 신청인이 가족수당 수급 가능
- ▶ 부양가족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는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하루라도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 가족수당 전액 지급 (예시) 가구원인 아버지의 연령이 5.10부터 70세가 된 경우, 지급주기가 4.11~5.10이라도 해당주기 가족수당 10만원 지급
- ▶ 부양가족 중 부양가족 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외되기 전날이 포함된 지급주기는 가족수당 전액 지급하고, 다음 지급주기부터 가족수당 미지급
(예시) 1촌 이내 직계혈족이 아닌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부양 가족으로 인정. 이에 부양가족이었던 시아버지가 5.10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에 미등재 된 경우, 5.9이 포함된 지급주기의 가족수당은 전액지급, 이후 지급주기부터 가족수당 부지급

※ 주민등록등본 변경 발생시, 담당자에게 연락 필수

소득발생 신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의무 제출

✓ 지정일에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 (구직활동 증빙 + 소득증빙)

- ▶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 여부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또는 지급 정지 및 중단 결정 가능
- ▶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대상이더라도 소득 발생 여부와 구직활동 이행 여부는 신고해야 하므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반드시 제출

○ 허위 구직활동 : 구직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해당

-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한 행위 등

○ 형식적 구직활동 : 취업의사 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 부지급 대상

- 1) 마감된 구인업체에 입사지원, 2) 단순 명함 제출, 3)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미취업, 4) 전화로만 구직활동, 5) 근로조건 변동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6) 본인의 취업희망 직종과 무관한 직종에 입사 지원하는 경우 등



소득 발생 신고 시기 및 방법

- ▶ 취업활동계획 상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 시 소득 신고
- ▶ 모든 신고소득의 합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소득(이자 및 배당금 소득), 수급자격 조사 시 확인된 이전소득(연금 소득)이 시행령 제9조의2 제1호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 생각 가능

* 이 경우 소득액을 미신고 또는 적게 신고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음



신고 대상 소득 기준

- ▶ (원칙)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근로 제공, 사업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의 원인행위를 행하여 발생한 모든 소득은 실제 소득이 발생한 날을 포함하는 지급주기 지정일에 신고
- ▶ (예외 적용) 원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체불 임금 수령 등과 같이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2회 이상의 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여 해당 지급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에 영향이 있는 경우, 참여자의 분리 적용 요청을 받아 당초 지급하기로 한 날을 소득발생일로 반영 가능
- ▶ (유의 사항) 입증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고 입증자료(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 임금체불확인서 등)가 없으면 실제 소득이 발생한 날을 그대로 적용

소득발생-감액·정지 기준



신고 소득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①근로소득, ②사업소득, ③재산소득, ④이전소득과 ⑤취업지원·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으로 수급자격 인정일부터 소득의 원인행위가 발생한 사안에 한정 (수급자 본인의 소득)

-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수급자(월 250만원 미만 소득 발생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의 소득 금액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시 제3조 제3항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 지급주기 중 발생한 매출(수입)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등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및 기타 영리 목적 사업 소득 등 *업종별 조정률 적용
재산소득	이자소득(예금, 적금 등의 이자) 및 배당소득(주식배당금)
이전소득	국민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소득	훈련장려금(교통비, 식비)
	K-MOVE (해외취업) 연수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 1차 전직장려금-60만원, 심화교육 참여수당-35만원, 연계수당-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
	일경험(청년-미래내일, 중장년) 등



신고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감액·지급 정지 기준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감액 지급 또는 지급 정지

* 기준소득이란?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의 2배 또는 1인가구 중위소득 60% 중 더 많은 금액

기준금액	월 단위 지급액	신고소득	지급액	신고소득	지급액
1인 가구 중위소득 60% (1,538,543원)	600,000	938,543 초과	감액지급 (차액지급)	1,538,543 초과	지급정지 (부지급)
	700,000	838,543 초과		1,538,543 초과	
월 지급액의 2배	800,000	800,000 초과		1,600,000 초과	
	900,000	900,000 초과		1,800,000 초과	
	1,000,000	1,000,000 초과		2,000,000 초과	

('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 : 1,538,543원)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
- 이때 취업지원 중단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수급 등 모든 취업지원서비스의 종료를 의미
- ▶ 분할지급을 신청한 경우 및 구직활동 일부 이행으로 감액을 하는 경우에도 본래의 기준 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부정수급



부정행위

- ▶ (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행위(법제27조)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함
- ▶ (제재대상) 취업활동비용(법제16조), 취업성공수당(법제17조), 구직촉진수당(법제18조)
- ▶ (판단기준) 수급자의 행위가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지 **않아야** 될 수당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는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
- ▶ (사실관계 기준판단) 부정행위 여부 판단은 형식이나 계약 내용 및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부정행위 주요 유형



거짓신고 및 미신고

- ▶ 수급자격인정 : 취업사실 및 취업경험요건, 가구원 범위, 소득 및 재산, 재참여 제한기간 관련 등
- ▶ 구직촉진수당 : 취업사실,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직활동 의무이행관련, 지급주기 중에 소득 발생, 지정일 변경사유,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
- ▶ 취업성공수당 : 취업인정기준 관련 및 성공수당 수급 관련



부정한 방법

- ▶ 거짓으로 작성된 각종 신청서,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수급자격 인정
- ▶ 구직촉진수당 관련, 취업성공수당 관련 거짓으로 작성된 각종 신청서,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부정수급 처분 (부정수급 제재)



행정처분 구직자취업촉진법-(연대처분) 부정수급자와 제3자가 공모한 경우에는 공모한 자도 부정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명령(추가징수 포함)에 책임을 짐

- ▶ **지급제한(법제27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날(해당 지정일)부터 지급 제한
 - 당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촉진수당 등의 수급권은 지급 제한일부터 모두 소멸
 -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지급결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제한
- ▶ **반환명령(법제28조제1항) : 지급제한일 이후(제한일 포함) 지급된 수당은 부당이득반환 대상**
- ▶ **추가징수(법제28조제2항및시행규칙제19조)**
 -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법령에서 정한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8조를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

취업지원 이관 및 유예



취업지원 이관

- 거주지 이전 등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져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으로 변경을 원하는 수급자는 「취업지원 이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존 고용서비스 기관(위탁기관포함)에 제출, 취업 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수급 받을 수 있음
- ▶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희망 시 기존 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등 계속 제공 가능, 수급자의 단순한 요구에 의한 위탁기관 변경은 불가능하며, 위탁기관 관리 수급자는 위탁기관으로 이관, 고용센터 관리 수급자는 고용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
- 이관 후 취업지원 경로(계획)는 유지하되,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 변경 가능



취업지원 유예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사유가 해소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취업지원을 정지하는 등 수급자격을 일정기간 유지해주되

- ▶ 유예 기간에는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및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지되고, 유예되는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자동 연장
- ▶ 유예 기간 중이라도 취업지원 종료사유 발생 시 취업지원이 종료되며, 유예기간 중 취업 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 대상은 되지 않음

✓ 기간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 유예를 허용

- ▶ **횟수**: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 **종료**: 사유가 해소된 날 또는 결정된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한 날

✓ 사유

- ①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임신·출산·유산·사산)
 - ★ 출산 후 최소 45일간은 반드시 유예-근로기준법에 따라 산후 45일은 휴가 보장(근로능력없는 것으로 간주)
-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④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2년 이내의 범위)
- ⑤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
- ⑥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⑦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⑧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

✓ 유예신청

사유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를 고용서비스기관(담당자)에 제출

✓ 재참여신청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또는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서비스기관(담당자)에 제출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수급자격 인정 철회

-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본인의 정신·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명백히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학업 또는 군복무 중인 자,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자, 심신장애 및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곤란한 자, 본인의 교양·여가 등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수강하려고 하는 자)
- 성실하게 참여가 불가능한 자 (반복적인 훈련만 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 특별 민원 등을 상습·반복 발생시킨 자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일자에 방문하지 않았거나,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부과한 의무(진로상담·직업심리검사 참여 등)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소득발생으로 **지급 정지 횟수가 3회인 경우** (취업지원도 중단)



취업지원 종료

- 취업지원이 만료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사후관리기간 포함)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사후관리기간 포함) 중 취업 또는 창업
 - ▶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로 취업(일용직, 자활근로, 직접일자리 제외) / 사업자 등록으로 개업하여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사업자등록 상 개업일 기준) / 월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노무제공자로의 취업(월 250만원 소득이 발생한 월의 근로 제공 기산일 또는 소득이 발생한 날)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로 선정 - 근로시간 및 소득과 관계없이 종료 처리 (취업 종료 처리 대상 아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
-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 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구직촉진수당 수급만 종료)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는 지속 제공
- 구직활동의무 미이행으로 지급 중단 횟수가 3회인 경우(구직촉진수당 수급만 종료)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자격은 유지되어 남은 기간 취업지원서비스는 지속 제공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도중 법 제6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만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수당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소득발생으로 지급 정지 횟수가 3회인 경우 (철회 및 중단)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날**
-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료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 종료 요청서 제출

종료 구분(사유별) 및 재신청 가능일



종료 구분(사유별)

종료 구분	종료 사유
기간만료, 사후관리 만료	취업지원서비스(사후관리기간 포함) 기간만료
취업, 사후관리 취업	①취업(임금근로자) ②취업(노무제공자) ③창업
중단	①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참여자로 선정, ②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③유예기간 만료 혹은 사유 해소 후 미참여, ④수급자격인정철회(취업활동계획 미수립), ⑤구직촉진수당 중단, ⑥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미달, ⑦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미달, ⑧법 제7조제3항제5호 수급자로 선정, ⑨구직급여 수급자로 선정, ⑩수급자격 인정철회(소득초과 지급정지 3회), ⑪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⑫수급자 본인 희망, ⑬기타
사후관리 중단	①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참여자로 선정, ②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③법 제7조제3항제5호 수급자로 선정, ④구직급여 수급자로 선정, ⑤수급자 본인 희망, ⑥기타
자치단체 이관	자치단체 이관



종료사유 및 취업기간별 재신청 가능일

구분(종료 사유)	재신청 가능일	
①취·창업,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 부정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따른 종료자	•종료일부터 3년 경과 후 예 : 종료일이 '26.12.3.인 경우 ↳ '29.12.3.부터 재신청 가능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업 지원이 종료된 경우 ('24.2.9부터 사후관리기간 중 취·창업자 포함*)	②취·창업 종료자 중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취·창업에 따른 종료일부터 2년 경과 후
	③취·창업 종료자 중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취·창업에 따른 종료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④취·창업 종료자 중취·창업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취·창업에 따른 종료일부터 1년 경과 후(즉시)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업 지원이 종료된 경우 ('24.2.9부터 사후관리기간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자 포함)	⑤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어 종료된 경우	•위 ②~④의 일반적인 취창업 기간별 기준 적용 (취업지원 종료 이후 재참여하는 경우)
⑥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을 받은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 취소 결정일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5년 경과 후	
⑦고용센터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취업 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년 경과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 제한기간을 설정	

취·창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이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으로, 취업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이며, 취업의욕을 제고하는 기제이자, 취업상태를 일정기간 유지 시킬 수 있는 근속 유도 기제로서 의미를 가짐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기간

-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및 II유형 특정계층 수급자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 기간 (취업지원 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포함)내 취·창업으로 종료되고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중 지급기준에 충족한 자 (유예기간 중 취·창업은 지급대상 아님)
- 취·창업 후 12개월 동안 근속을 유지한 경우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
 - ▶ 취·창업일로부터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어서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지급



지급기준

-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 ▶ 예외적 지급 대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농업·임업 및 어업 중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 등) 취업자, 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공무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창업** 사업자등록+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사업 영위를 위한 매출 발생
 - ▶ 예외적 지급 대상: 신규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소분류 이상의 업종을 추가·전환 하거나 소분류 이상의 다른 업종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레미콘 기사 등과 같은 노무제공자는 건물 형태가 아닌 차량(구입 또는 임차)도 인정,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 중소 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의 확인을 받거나 월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지속 발생한 경우 무점포여도 전용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1인 창조기업확인서 제출)
- ✓ **노무제공자** 취업 종료일 기준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지속 발생
 - ▶ 매출(수입)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율을 적용

취·창업 후 예외 적용 사항

- 첫 번째 취·창업 후 1개월 미만 퇴사자에 대한 예외: 지속참여 (1회 한정)
 - 퇴사 후 1개월 이내 취업지원서비스 지속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취·창업을 취소 (이 경우 일용근로로 간주되어 취업종료 취소)
 - 수당 수급 목적의 입·퇴사 방지 등을 위해 참여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으로 한정
 - 첫 번째 취업 후 이직 예외 적용: 3개월 이내 이직(퇴사), 1개월 이내 재취업
 - 첫 번째 취업 이후 3개월 이내 이직(퇴사)하고,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모두 요건 충족)
 - 재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 이직 및 전직 통지서'를 제출
 - 이직한 사업장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 연속 근로로 사업장 변경 예외 적용 (1회 한정)
 - 취업 후 전직(자발적 및 비자발적 모두 포함)으로 사업장이 변경되어도, 피보험기간 단절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속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근로자의 날, 토요일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피보험기간 단절이 있는 경우는 연속 근로로 인정

취·창업성공수당



제출서류



임금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별도 서식)



창업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요건확인 가능 서류, 사업을 계속하고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지급 신청서



노무제공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노무제공 입증 증명자료 등(매입·매출 발생 자료, 재직증명서나 활동 증명서 등), 소득금액 증명자료 등, 지급신청서



신청방법



온라인(고용24 www.work24.go.kr) 또는 방문, 팩스로 신청 가능: 신청 후 담당자에게 연락

▶ 고용24 (www.work24.go.kr)(본인인증-로그인)

① PC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성공 수당 신청

② 앱(핸드폰) : 취업준비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성공 수당 신청



취·창업성공수당 부지급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전 최종 이직 직장(상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으로 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시 취업한 경우
 - * 예외 : 동일 기업(사업)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장소를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른 직장으로 간주
-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 근로자
- 공무원 취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취업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또는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건전한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으로의 창업
- 기 등록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 취임한 경우의 창업
- 통신판매업 등 인터넷 창업을 포함한 모든 무점포 창업 및 독서실, 고시원 등과 같이 고유의 사용 목적이 있는 공간을 사업 장소로 신고, 창업한 경우 (단, 사업운영으로 월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지속 발생한 경우 예외)
- '25.11 취업자부터 유사사업 지원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에 충족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25.7.7. 변경)
 - ✓ 취업성공수당은 저소득층 대상 신속한 취업과 근속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유사 목적의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지원 가능 (다만 타 사업에서 취업성공수당과의 중복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구직촉진수당 신청(구직활동보고)-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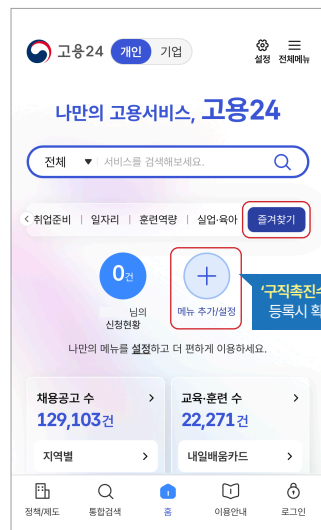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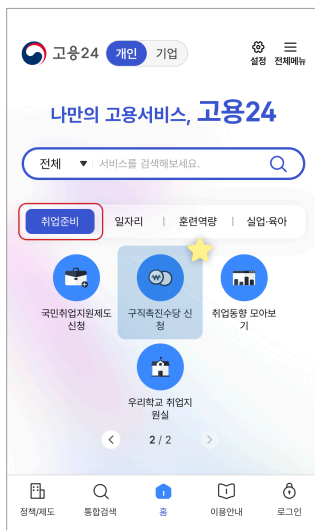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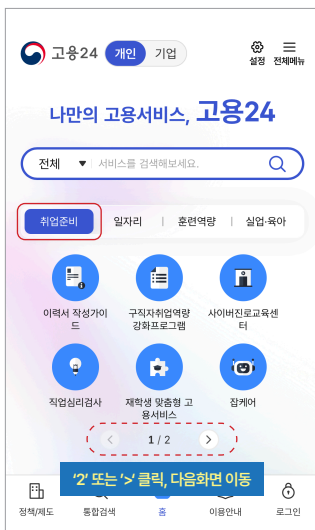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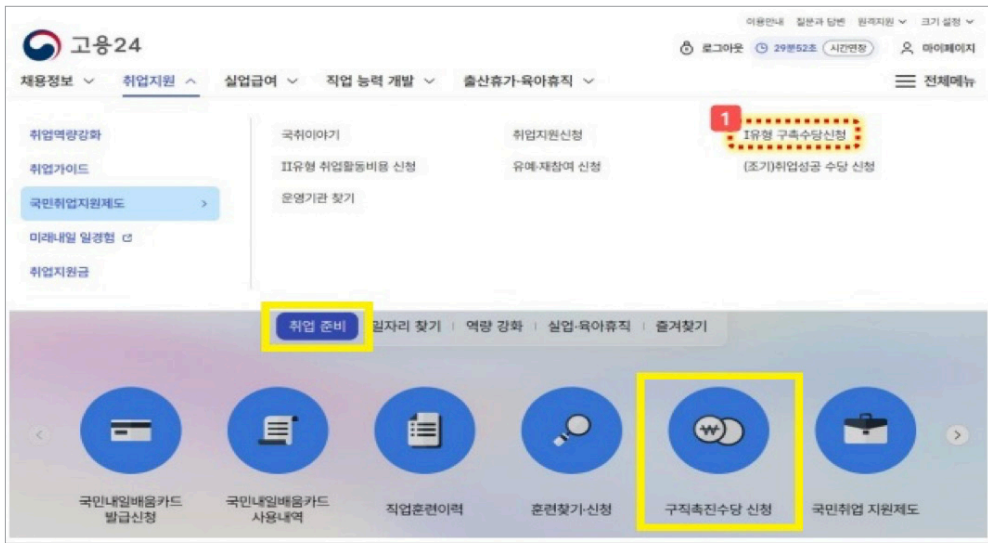
※ 민원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실명 확인이 필수 (회원가입시 최초 1회/팝업창-성명,주민번호 입력)

✓ 메인화면(모바일,PC동일) ⇒ 취업준비 ⇒ 구직촉진수당 신청 (2페이지 또는 다음)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I유형 구직수당 신청

▶ 마이페이지 ⇒ 참여프로그램 관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 I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 오른쪽 상단 '★' 클릭시 '즐거찾기' 등록 가능 (로그인시 메인 화면에서 확인 가능)



구직촉진수당 신청(구직활동보고)-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 신청 회차 선택 (이행기간 및 제출일(신청일) 확인) ⇒ 구직촉진수당

선택	회차	취업활동계획 이행기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			구직활동수당지급
			제출일 (신청일)	진행 상태	보완 요청	진행 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회차	2024-10-11 ~ 2024-10-23	2024-10-23	완료	-	지급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회차	2024-10-24 ~ 2024-11-23	2024-11-23	미제출	-	-
<input type="checkbox"/>	3 회차	2024-11-24 ~ 2024-12-23	2024-12-23	미제출	-	-
<input type="checkbox"/>	4 회차	2024-12-24 ~ 2025-01-23	2025-01-23	미제출	-	-
<input type="checkbox"/>	5 회차	2025-01-24 ~ 2025-02-23	2025-02-23	미제출	-	-
<input type="checkbox"/>	6 회차	2025-02-24 ~ 2025-03-23	2025-03-23	미제출	-	-

구직촉진수당 신청

구직촉진수당 신청

✓ 신청 회차 선택 (이행기간 및 제출일(신청일) 확인)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 내용 보기'를 통해 회차에 따른 계획 확인 가능 ⇒ 계획에 따른 신청 사유 자동 선택

-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 : 직업훈련(수업), 집단(단기)프로그램, 자격증 응시 등
- ▶ 구직활동 프로그램 이행 : 입사지원(이력서 제출 및 면접 등)
- ▶ 취업지원, 구직활동 프로그램 이행 : 복합 계획시 (특강 1회+구직활동 1회)

신청내용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신청사유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지정일(지급 신청일) 2024-11-23 구직활동 이행기간 2024-10-24 ~ 2024-11-23

회차 2 회차 신청금액 **취업활동계획 내용 보기**

취업활동 이행보고서

- 이행보고서에 등록된 활동계획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관할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활동계획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STEP.1 활동계획에서 보고할 프로그램의 [이행동록] 버튼을 이행 횟수만큼 클릭하면 STEP.2 활동보고에 입력란이 추가됩니다.
- STEP.2 활동보고 목적을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하신 입력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구직활동보고)-온라인



활동계획(STEP_1) 확인 ⇒ '이행등록' ⇒ 활동보고(STEP_2) 생성·작성

✓ 계획된 활동이 아닐 경우 불이행 처리,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 직업훈련(수업), 집단상담, 자격증 시험응시, 단기취업특강, 일경험 등 이행시
- ▶ 활동보고 참여기간 : 수료한 날짜 및 참여한 기간 입력

취업지원 프로그램

STEP.1 활동계획 (2회차)

구분	프로그램	참여(예정)기간	운영기관	전화번호	이행등록
기타	사상을 사로잡는 서류전형 준비	2024-10-24 ~ 2024-11-23	사이버진로교육센터	02-1577-7114	이행등록
기타	마음을 사로잡는 면접전형 준비	2024-10-24 ~ 2024-11-23	사이버진로교육센터	02-1577-7114	이행등록

STEP.2 활동보고

구분	프로그램	참여기간 *	운영기관	전화번호	추가/삭제
기타	사상을 사로잡는 서류 전형 준비	YYYY-MM-DD - YYYY-MM-DD	사이버진로교육센터	02-1577-7114	추가 삭제

✓ 구직활동 프로그램

- ▶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 참여 등 이행시
- ▶ 이행 횟수(이력서 제출 횟수)만큼 '이행등록 클릭시' 활동보고 작성칸 생성, 또는 추가

구직활동 프로그램

STEP.1 활동계획 (6회차)

구분	활동 기간	활동 횟수	이행등록
입사지원서(취업일선상당 포함)제출	2024-08-16 ~ 2024-11-21	월 2회 이상	이행등록

STEP.2 활동보고

구분	활동명 *	활동 내용 *	활동기간 *	추가/삭제
입사제출	고용24 입사지원	고용명을 입력해 ×	YYYY-MM-DD - YYYY-MM-DD	추가 삭제

구직촉진수당 신청(구직활동보고)-온라인



구직활동 프로그램 - '활동보고' 입력 방법 (고용24, 그 외 타사이트 이용)

1. 고용24 입사지원시: 버튼 클릭 ⇒ 적용시 자동 입력

버튼 클릭시 ↓ 팝업창 : 회사명 등 지원내역 확인, 선택-적용 ⇒ 활동보고란 자동 입력

선택	채용제목	지원일	
<input type="checkbox"/>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집(경력직)	2024-11-22	
<input type="checkbox"/>	(주) 국제로지스틱	물류시스템 시스템관리자 모집	2024-11-22

2. 타사이트(민간포털, 메일, 사업장 직접 제출 등) 입사지원시 ⇒ 직접 입력

- ▶ 활동명 : 지원한 사업장명 (회사명) 작성
- ▶ 활동내용 : 모집공고 제목 등 내용(직무-하는 일) 작성
- ▶ 활동기간 : 지원한 날짜 (이력서 제출일 등)

구직촉진수당 신청(구직활동보고)-온라인



전달사항(구직활동 결과) 입력 및 증명서류 첨부

✓ 전달사항 : 구직활동 결과 입력

예시> 12/23에 응시한 컴활 필기 시험은 합격하였으며 실기시험은 1/20 응시 예정입니다.
12/20 지원한 (주)ooo은 12/30 면접 예정입니다.

취업활동 보고 전달사항 및 첨부파일

- 취업활동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상담사에게 전달할 내용을 입력하세요.

전달사항

- 12/23일 응시한 컴활 필기 시험은 합격하였으며, 실기시험은 1월20일 응시 예정입니다.
- 12/20일 지원한 (주)ooo은 12/30에 면접예정입니다.

✓ 이행보고 증명서류 - 첨부파일 등록 (최대 10개)

- ▶ 취업지원 이행 : 시험응시 확인증, 수수료증, 출석부(미인정과정) 등
- ▶ 구직활동 이행 : 모집공고문(직종 및 근무조건 확인)+입사지원 내역(사업장 및 지원일, 본인 확인)

첨부파일

- 파일용량은 5MB 이하이며, 10개 파일 업로드 가능합니다.
- 등록 가능 파일 : gif, jpg, jpeg, bmp, png, pdf, zip, GIF, JPG, JPEG, BMP, PNG, PDF, ZIP

1. 이행보고 증명서류

첨부파일 등록 [첨부파일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첨부하거나, **첨부파일 등록** 버튼을 마우스로 끌어오세요.

구직활동별 인정 서류	
고용24	증빙자료 불필요-연동되어 확인가능 (단, 담당자의 확인 요청에 따라 첨부 가능성 있음)
민간포털 (사람인, 잡코리아 등)	모집공고문 + 구직활동(취업활동)증명서 * 증명서 : 마이페이지 ⇒ 입사지원한 내역보기, 증명서 보기
사업장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 최종 지원 완료 화면(내용) : 날짜 및 본인 확인 필수
메일	모집공고문(사업장 메일주소확인) + 메일 작성하기 화면(이력서 등 첨부 확인) + 보낸 메일함(날짜 확인)
방문 (면접 포함)	모집공고문 + 구직활동 내역서, 면접(방문지원)확인서 * 사업장 확인 필수 (사인 및 명함 등)
채용행사	행사 안내문 + 모집공고문 + 참여확인서(또는 면접응시확인서)
모집공고가 없는 사업장에 이력서만 제출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 불가 ⇒ 수당 부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구직활동보고)-온라인



소득 발생 신고

소득발생여부에 따라 수당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미신고로 인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 **소득 있을 경우** : 소득신고 추가 ⇒ 유형에 맞게 입력 ⇒ 증명서류 첨부

- ▶ 소득유형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취업지원·구직활동 프로그램 소득
- ▶ 소득액 : 실제 수령한 금액(통장에 입금된 금액), 급여명세서 금액, 매출 등
- ▶ 소득내용 : 소득발생 사유 작성
- ▶ 소득발생일 : 돈을 받은 날 (근로를 제공한 날 아님)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등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및 기타 영리 목적 사업 소득 등 *업종별 조정을 적용
재산소득	이자소득(예금, 적금 등의 이자) 및 배당소득(주식배당금)
이전소득	국민연금(유족연금, 장애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람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소득	훈련장려금(교통비, 식비)
	K-MOVE (해외취업) 연수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 1차 전직장려금-60만원, 심화교육 참여수당-35만원, 연계수당-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
	일경험(청년-미래내일, 중장년) 등

구직촉진수당 신청(구직활동보고)-온라인



취업(예정) 신고

- ✓ 해당회차 기간내(이행기간내) 취업(예정) 되었다면 '예'(입력)
 - ▶ 취업시 담당자에게 연락 필수
 - ▶ 지정일 전까지 취업 확인 불가시 근로계약서 등 취업증빙서류 첨부 필수



가족수당

- ✓ 1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당시 기준으로 표기
 - ▶ 신청여부 및 성명, 신청가능여부(가능/불가), 연령대상신청, 중증장애신청 확인
 - ※ 중증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첨부 필수
 - ▶ 신청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전 회차 신청내역과 동일한 정보 신청' ⇒ 아니요 선택, 연령 등 변동사항 적용 가능



지급계좌

- ✓ 1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시 계좌번호로 입력되어 있음(계좌변경 희망시,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여 수정-변경 가능)
 - ▶ 취업이름통장 / 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통장으로 발급, 미리 확인받았을 경우 체크

구직촉진수당 신청(구직활동보고)-온라인



제출예약(저장) / 제출

✓ 신청일=지정일=제출일

▶ 알림톡(문자) 자동 발송 서비스: 지정일 5일전, 1일전 발송 ✓알림톡 발송 전 '저장'시 알림X

✓ 지정일 이전일 경우, 제출 예약 동의 '예' ⇒ '저장' ⇒ 지정일 다음 날 자동 제출

- ▶ 저장: 지정일 이전 입력 가능, 수정 가능
- ▶ 제출 예약 동의-저장시: 지정일 다음날 0시 5분 이후 자동 제출

✓ 지정일인 경우 '제출'만 가능

- ▶ 제출: 지정일 '00시'부터 제출 버튼 활성화
- ▶ 지정일 이외 제출 불가: 지정일 반드시 제출

✓ 제출 이후, 담당자의 '보완' 알림톡(문자)이 확인된 경우

▶ 증명서류 누락 등 보완 필요시 발송되며, 기간 내 보완하여 제출 가능

제출예약

제출 예약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 제출 예약 동의는 '예'로 선택하고 저장하면 지정일 자정(24:00)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출되어 접수처리됩니다.
- 자동제출이 필요없는 경우 '아니오' 상태로 저장해주시고, 반드시 지정일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예약에 '아니오'로 저장된 건은 지정일 당일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정일 다음날 0시 5분에 '미제출'처리되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고시 제출 전에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원하는 내용을 수정 후 다시 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후 추가서류 제출이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상담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온라인 제출이 어려우면 이메일, 팩스, 직접 방문 등의 다른 방법을 지정일이 지나기 전에 담당 상담사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저장

제출

✓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신청구분	구직촉진수당
신청유형	2회차
신청일	2024-11-21
관할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나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참여 현황

참여장려수당 신청-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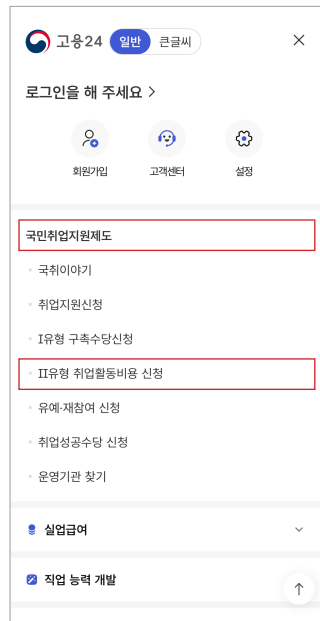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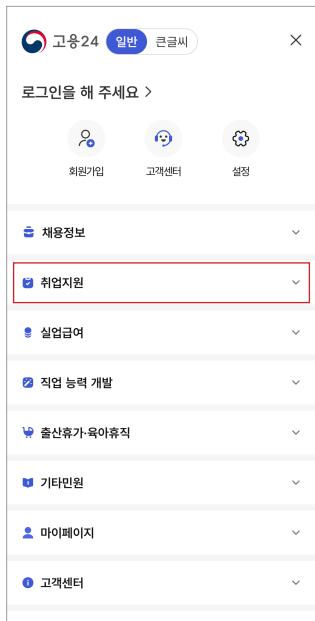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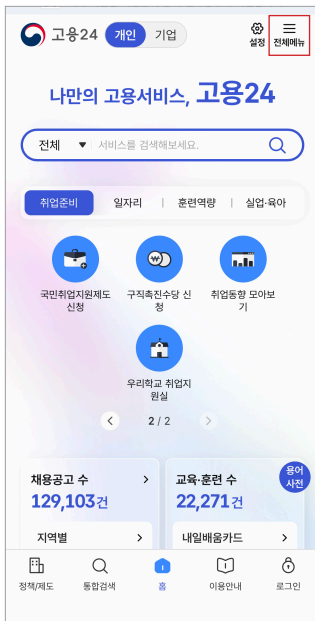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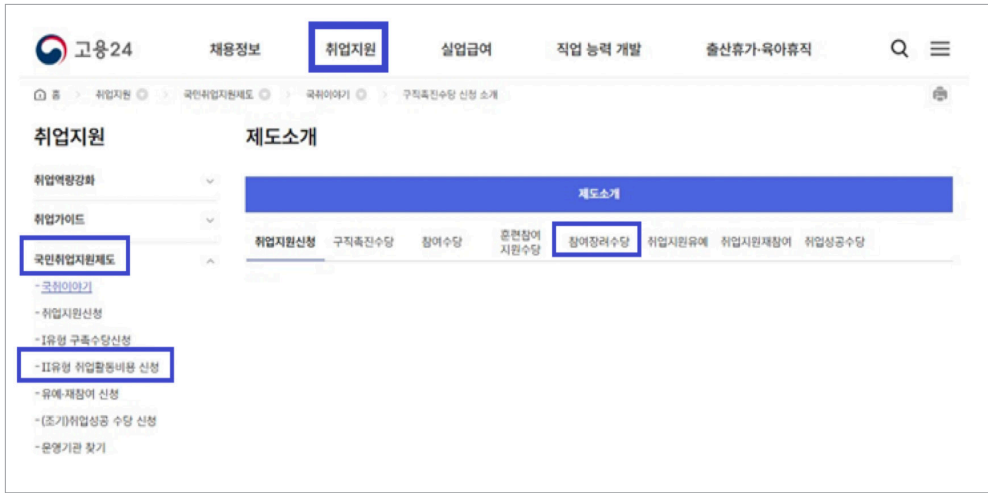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

민원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실명확인이 필수 (회원가입 시 최초 1회 / 팝업창-성명,주민번호 입력)

☑ **메인화면(모바일, PC동일)**

- ▶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신청 → 참여장려수당 신청
- ▶ 마이페이지 → 참여프로그램 관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지원대상은 지역별로 다름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해당 기업 취업 청년



지원내용

|(수도권) 기업에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기업에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반기마다 120, 150, 180만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 미래내일 일경험프로그램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이란?

- 채용시장 경향이 수시·경력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하여 직무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



사업유형

- (인턴형) 기업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수행하여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 (프로젝트형) 기업이 제안한 현업 기반 프로젝트를 팀 단위로 수행하고, 수행 과정에 대한 전문가, 현직자 등 코칭·평가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 지원(2개월 내외)
- (ESG지원형)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설계한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인턴형) 사전직무교육 참여수당 3.75만원/주, 일경험 참여수당 35만원/주
- (프로젝트형) 사전직무교육 참여수당 3.75만원/주, 일경험 참여수당 7.5만원/주
- (ESG지원형) 일경험 참여수당 100만원 내외/월



참여문의 등

- 미래내일 일경험 상담 센터(1811-8447)
- 미래내일 일경험 플랫폼(yw.work24.go.kr/main.do) 참고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 중장년 경력지원제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이란?

-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취업 가능성을 제고



지원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 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 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 (참여자)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지원금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요건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제외 근로자 및 사업장 요건들을 충족해야 지급 가능,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문의하여 특정 사업장이 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필요**
 <사업장이 대상자를 희망하는 경우 모집공고문 우대조건에서 확인 가능>



지원자격(대상)

- 취업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 필수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자(Ⅰ유형,Ⅱ유형)로서
 ①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②기간만료 및 취업으로 수급이 종료된 자 등 이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자격유효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 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다른 사유로 종료(중단)된 자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취업희망플 등재)**:(예정일)

이후 >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활동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①중증 장애인 ②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③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



지원내용(금액)

-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자로
-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연 최대 720만원(대규모기업 360만원) 한도 내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고용24 www.work24.go.kr)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사업주가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날부터 매 6개월마다(1년간) 직접 신청



지원자격(대상)

- **근로자** ①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②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③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④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⑤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재학생, 노무제공자 등) ⑥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주** ①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③주점, 갬블링 및 베틱,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 ④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⑤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⑥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 첫 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직업지도프로그램 안내(고용24 www.work24.go.kr)



직업지도 프로그램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단기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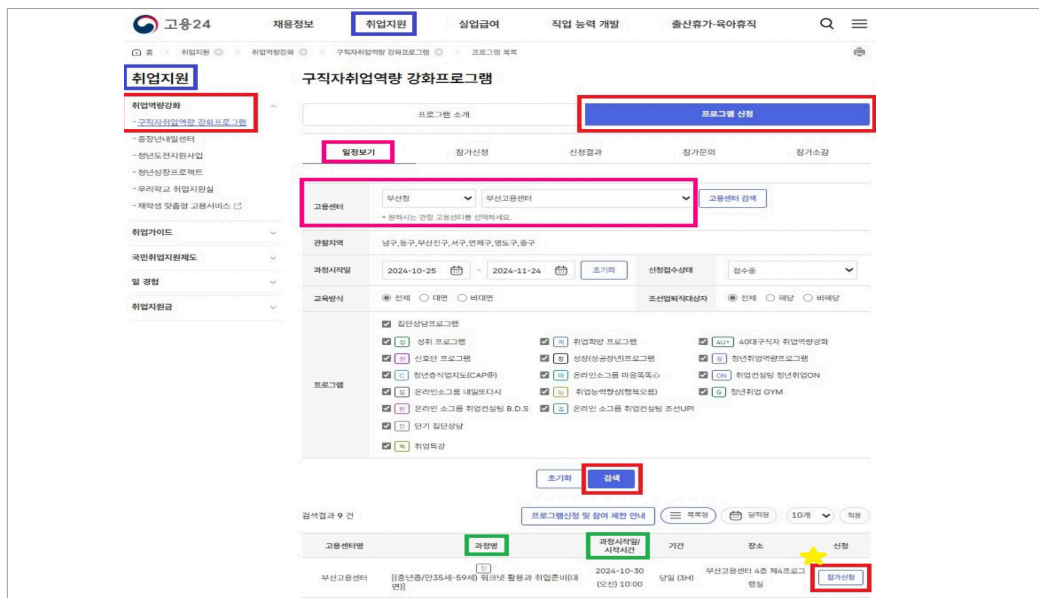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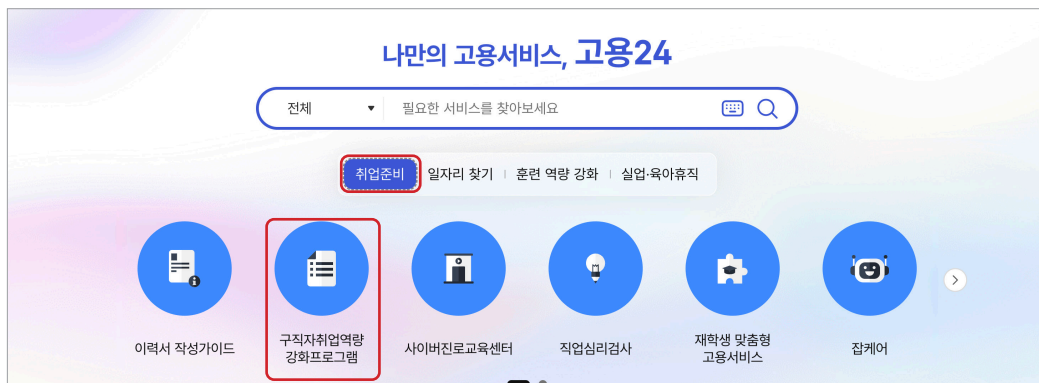
취업활동계획 반영시 수강 가능 (임의수강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불가)

취업특강은 전체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2회만 인정



신청방법 : 고용24 www.work24.go.kr

- 취업지원 ⇒ 취업역량강화 ⇒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 프로그램 신청
- 일정보기 : 고용센터 선택(부산), 검색 ⇒ 과정명, 시작일 확인가능
- 희망하는 과정 '참가신청'



사이버진로교육 안내(고용24 www.work24.go.kr)



취업활동계획 반영시 수강 가능 (임의수강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불가)

아래 외 과정은 홈페이지 참조, 인정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담당 상담사와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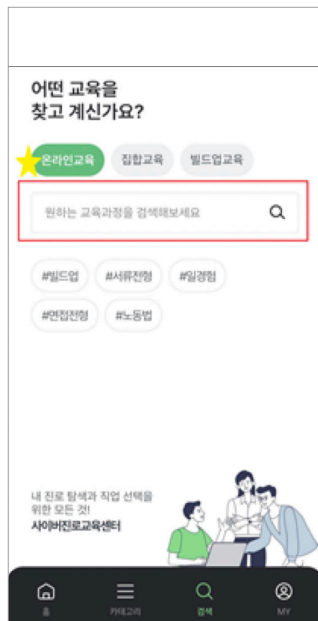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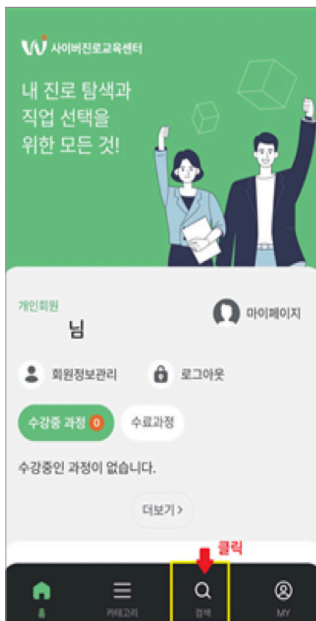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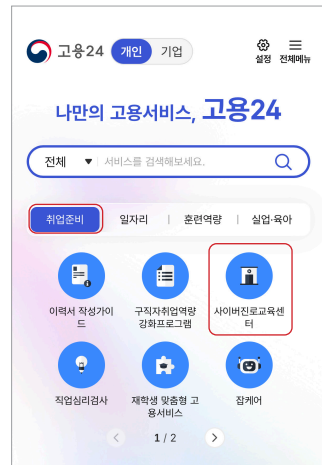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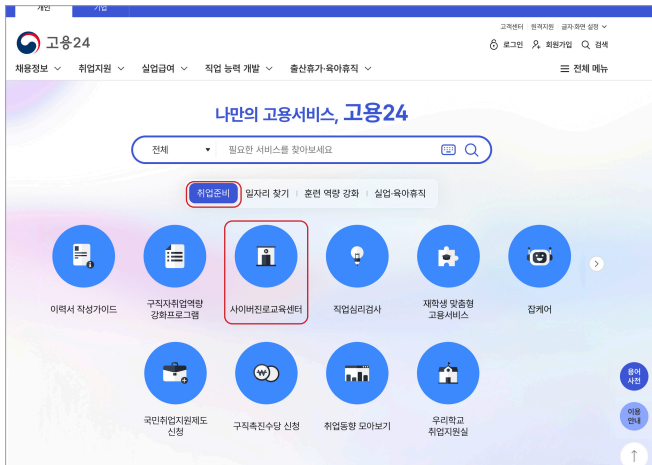
번호	과정수	프로그램명
1	1과정	4차 산업혁명시대, 알아야하고 배워야 하는 직업세계 (5시간)
2	1과정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법 이야기 (4시간)
3	2과정	시선을 사로잡는 서류전형 준비 (2시간) 마음을 사로잡는 면접전형 준비 (2시간)
4	2과정	(청년) 왜 일을 해야 할까?: 일의 의미와 가치 인식 (2시간) (청년) 나를 찾아 떠나는 진로 여행 (2시간)
5	2과정	(청년) 나를 말하다: 나에 대한 재발견 (2시간) (청년) 구직을 위한 자신감 향상 솔루션 (2시간)
6	2과정	(청년) 직무환경 변화에 대응 비법(Part1) : 변화 대응 전략 (2시간) (청년) 직무환경 변화에 대응 비법(Part2) : 나만의 심리적 자원 활용 (2시간)
7	2과정	(청년) 채용트렌드를 알면 취업이 보인다! (1시간) (청년) 채용정보 꿀팁! 효과적인 채용정보 수집 방법 (2시간)
8	2과정	(청년) 요즘 대세(AI)가 알려주는 직업 정보 (1시간) (청년) 다양한 구직정보의 분석 및 활용 전략 (2시간)
9	1과정	(청년) 나에게 맞는 직업정보 탐색하기 (3시간)
10	1과정	(청년) 잡(Job)으로 가는 첫 걸음, 나의 역량 탐색 (5시간)
11	2과정	(청년)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은 이제 끝! 구직실패 극복하기 (2시간) (청년) 이번만큼은 J(계획형)로!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2시간)
12	2과정	(청년) 구직 오답노트, 구직 바로 알기 (1시간) (청년) 구직정보 분석의 모든 것: 산업, 기업, 직무분석 (2시간)
13	2과정	(청년) 서류와 면접의 기본! 산업, 기업, 직무 분석하기 (2시간) (청년) 면접 합격의 KEY: 면접을 좌우하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2시간)
14	2과정	(청년) #센스 있는 자기 PR: 자기소개서 Ato Z (2시간) (청년) #취뽀를 부탁해, 나만의 커리어 포트폴리오 작성하기 (1시간)
15	1과정	(청년) 면접관을 사로잡는 면접답변 전략 (3시간)
16	2과정	(청년) 요즘 면접, 실무면접 노하우 (2시간) (청년) 토론면접과 프레젠테이션 면접의 실전 노하우 (2시간)
17	3과정	(청년) 직장생활 실전 가이드(1) - 조직과 업무 (1시간) (청년) 직장생활 실전 가이드(2) - 소통과 협업 (1시간) (청년) 직무환경 변화에 대응 비법(Part3): 자원 탐색 및 관리 전략 (2시간)
18	2과정	(청년) 새로운 시작: 경력전환의 성공 노하우와 실천방안 (2시간) (청년) 경력전환 전문(가) '이전창' 이야기 (2시간)

사이버진로교육 안내(고용24 www.work24.go.kr)



고용24 www.work24.go.kr

- 메인화면(모바일,PC동일) ⇒ 취업준비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 취업지원-취업가이드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 '온라인 교육' 과정 검색 (모바일:돋보기 클릭) ⇒ '수강신청' 클릭
- ✓ 수료(수강) 후 '마이페이지' ⇒ 나의 수강 현황 ⇒ 수료 교육 - 수료 이력 확인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과정찾기



취업활동계획수립시 취·창업 희망 직종과 관련된 훈련(수업)과정만 가능



훈련(수업)과정 탐색 후, 학원 상담 진행 ⇒ 수강신청을 위한 훈련탐색표 제출

- 직접 훈련 과정을 임의 등록(수강 신청-온라인 신청)하는 경우 중단(종료)사유에 해당. 담당자와 상담 (훈련필요성 및 적합 훈련과정탐색 등) 후, 담당자가 직접 수강신청 및 등록·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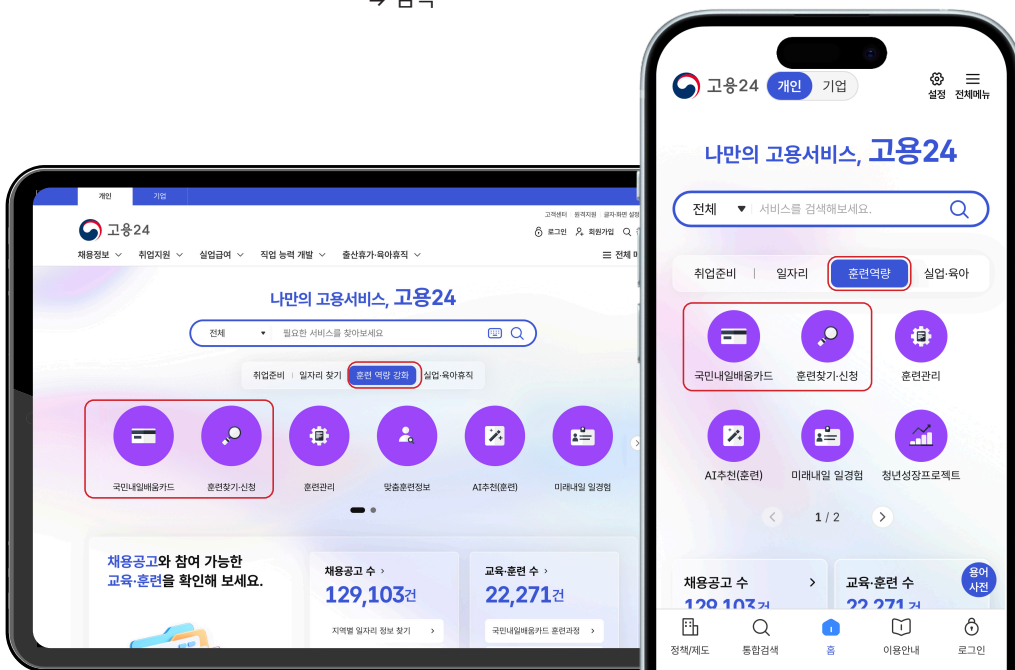
훈련과정 찾기 : 고용24 www.work24.go.kr

○ 메인화면(모바일, PC동일)

- ⇒ 훈련 역량 강화
- ⇒ 훈련찾기·신청

○ 직업능력개발

- ⇒ 훈련 찾기·신청
- ⇒ 국민내일배움 훈련과정
- ⇒ 검색어(수업과정명-직무), 지역(부산 등) 입력
- ⇒ 검색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하기



발급 신청 후 담당자에게 연락 필수!

- 임의로 발급 신청시 반려(신청취소) : 카드발급확인(관할)부서 별도, 미연락시 확인 불가



‘은행방문’으로 신청시 [확인서] 발급 받아 지정된 은행 방문(신분증 지참)



발급신청 작성(체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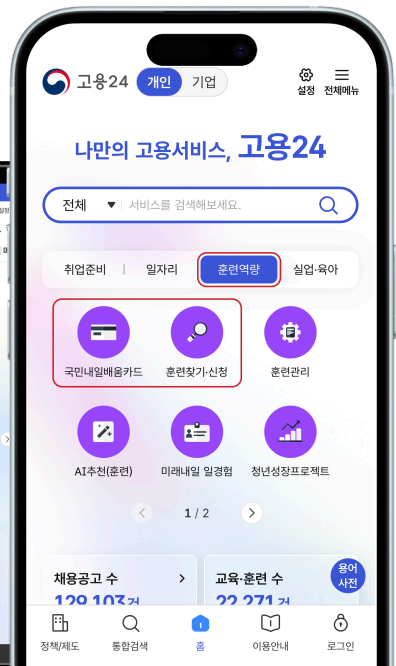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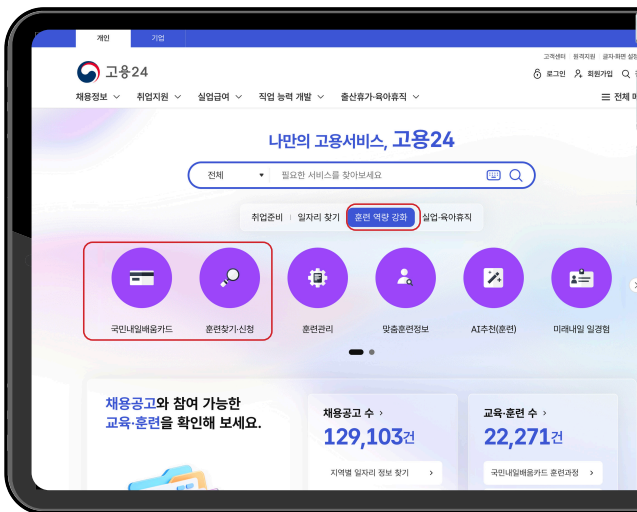
** 노란박스 : 권유사항

발급구분	신규발급	기존 카드 재사용 (보유한 카드 있을시 가능)	
카드사	농협	신한 (타은행계좌와 연결 가능)	
카드유형	체크카드	신용카드 (농협은 은행, 모바일만 가능)	
발급방법	은행방문	우편(전화)	우편(모바일)
통장동시발급(계좌생성)	가능	가능	불가
발급기한	즉시발급	발급까지 2주 이상 소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고용24 www.work24.go.kr

- 메인화면(모바일, PC동일)
 - ⇒ 훈련 역량 강화
 - ⇒ 훈련찾기·신청
- 직업능력개발
 - ⇒ 국민내일배움 카드
 - ⇒ 발급 신청



직업훈련(학원수업)시 유의사항



계좌한도 : 1인당 5년간 300만원 한도의 훈련비 지원

- 계좌잔액이 0원인 경우 및 다음 훈련과정 수강 신청시 지원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 일부 대상자에게 200만원 추가 지원 가능



본인부담금 : 직종별 취업률 40%이상인 과정은 본인부담금 면제

- I유형 전체 및 II유형 특정계층 적용사항, 직종별 취업률 40% 미만인 과정은 훈련비의 20% 본인 부담금 발생
- 수급자격 인정결정을 받은 날부터 등록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 적용



희망직종(취업희망분야)과 동일한 수업만 가능 - 임의 수강 신청 및 등록 불가

- 직접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시 불승인 처리,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승인 필요



동일 과정 재수강 불가, 훈련과정은 I유형 3회(개)/II유형 5회(개)로 제한

- 집체훈련(오프라인)만 I유형 3회(개) / II유형 5회(개)이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경우 최대 I유형 4회(개) / II유형 6회(개)까지 가능
 - ▶ 본인 부담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지속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방지하고자 함. 훈련참여 횟수를 초과한 훈련 연계 인정은 불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참여하겠다고 할 경우 종료(중단) 후 일반내일배움카드로 가능



훈련장려금(교통비, 식비) - 소득으로 신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수당)

지급대상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지급조건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정한 계좌로 지급 * 출석산정 : 지각, 조퇴 외출 3회 = 50%미만 출석 = 결석1일	
지급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월 200,000원
	K-디지털트레이닝 / 산업구조변화대응	월 200,000원
해당 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 만족도 조사시 마지막 달의 훈련장려금 지급 가능		
훈련 수강일마다 반드시 입·퇴실 시간 등록·관리, 카드 미지참 등 본인 부주의로 출석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수강포기(중도탈락)시 회차에 따른 계좌잔액 차감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 ✓ 원격훈련과정의 경우 1회 4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20만원 차감 ('25.8.1. 시행)
- ▶ 부정사용 및 부정발급시 계좌한도 전액 차감

기타 연계 프로그램 안내



일경험 프로그램

공공기관 인턴사업, 대학생 현장실습, 민간기업의 인턴제 등 단기 근로 등으로 3개월 내외로 운영하는 일자리 등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타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단체) 등의 다양한 일경험 및 인턴제 가능(단, 직접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은 제외), 기간 중에 **최대 2회로 제한**

✔ 청년일경험 (미래내일 일경험)

미취업 청년(15~34세)을 대상으로 '인턴형 일경험', '프로젝트형 일경험', 'ESG지원형 일경험' 총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 중장년 경력지원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 IAP수립후 자격 취득 또는 훈련 이수한 자로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참여기업에게 1인당 월 최대40만원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

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지원(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 대상 3개월간 지원), 3개월간 월 80만원지원, 이후 정규직(상용직) 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시 참여자에게 60만원 및 기업에 80만원 지원



해외취업 및 창업지원

✔ 해외취업 지원 (K-Move 스쿨, 해외인턴, 기타 해외취업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해외취업연수(K-Move)과정(월드잡플러스<http://www.worldjob.or.kr>참고), KOTRA(글로벌일자리사업), KOICA, 민간 해외취업알선 기관 등 해외 취업 연계

✔ 창업 지원 연계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창업진흥원,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등 중앙정부·자치단체 지원 창업지원제도, 대학내 또는 기관 연계 창업보육센터 등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 복지연계, 금융연계, 법률연계, 정신건강연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영구임대주택 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정신건강상담 및 예방 교육,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 소상공인지원(용자), 위기가족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의료지원 등



소상공인 및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을 수료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특화취업지원 서비스 및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국민취업연계수당(소상공인지원금) 추가 지급

✔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II 유형 해당)

직업훈련(1개월 이상)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 / 기업에 취업,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 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급(소득무관)

고용24 입사지원하기_개인정보수정



개인회원 정보 수정하기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 정보 수정

- ▶ 주소, 연락처 : 최신 정보로 수정
- ▶ 알림수신 : **SMS**-알림톡·PUSH - 민원처리, 고용서비스 수신 '**받음**'으로 변경 후 저장

마이페이지(개인)

마이페이지(개인)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 정보 수정

- 개인회원 성명 변경

- 비밀번호 변경

- 회원 인증서 관리

- 회원 탈퇴

- 즐겨찾기

맞춤정보

검색어

민원신청 현황

서비스이력

구직관리

직업훈련관리

참여 프로그램 관리

상담내역

외국인고용사업주

내 전자지갑

개인회원 정보 수정

회원정보 (*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성명	재동의일자
주소 * <input type="text" value="주소 검색"/>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x	
연락처 (택1) *	전화번호 <input type="text" value="선택"/> - <input type="text" value="전화번호 입력"/> 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휴대전화 <input type="text" value="010"/> - <input type="text"/> x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메일 <input type="text"/> x @ <input type="text"/> x <input type="text" value="직접입력"/>	
아이디	

알림수신

SMS/알림톡/PUSH 수신여부 - 민원처리현황 정보 제공	<input checked="" type="radio"/> 받음 <input type="radio"/> 받지 않음 - 서비스 신청 처리 현황 등을 휴대전화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희망 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하십시오.
SMS/알림톡 수신여부 - 고용서비스정보 제공	<input checked="" type="radio"/> 받음 <input type="radio"/> 받지 않음 - 추천서비스, 공지사항, 이벤트 등 새로운 소식을 휴대전화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희망 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하십시오.
이메일 수신여부 - 고용서비스정보 제공	<input type="radio"/> 받음 <input checked="" type="radio"/> 받지 않음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 행사, 뉴스레터, 이벤트 세미나, 박람회 등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희망 시 이메일 주소를 입력 하십시오.
이메일 수신여부 - 전자동지 서비스 제공	<input type="radio"/> 받음 <input checked="" type="radio"/> 받지 않음 - 고용보험 및 직업훈련 서비스 관련 확인통지서 등을 전자동지(E-mail)로 통보하는 서비스입니다. - Google, Yahoo, Hotmail 등 외국사이트와 사내메일은 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희망 시 이메일 주소를 입력 하십시오.

취소
저장

고용24 입사지원하기_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 마이페이지 ⇒ 구직관리

- ✓ 기본 이력서/자소서 설정 : 이력서 및 자소서 선택, 입사지원서 자동 제출
- ✓ 수정 : 우측 '이력서 항목'중 입력하고자 하는 사항 체크/입력

고용24 입사지원하기_일자리 찾기



일자리찾기 및 고용24 입사지원하기(PC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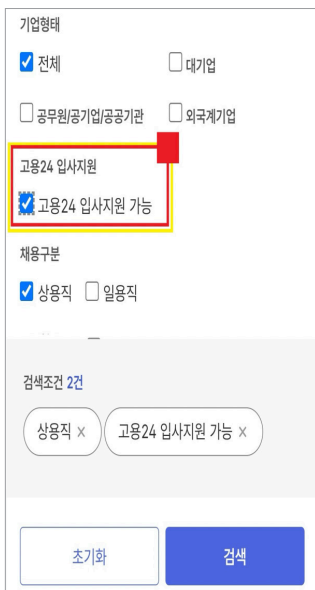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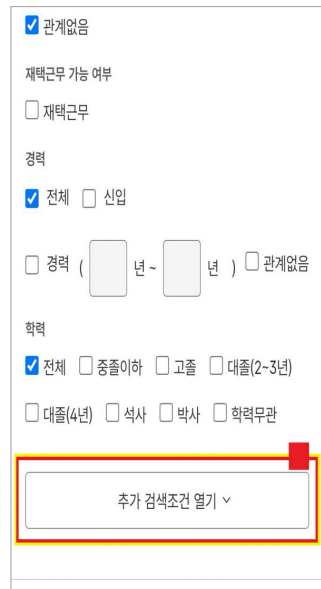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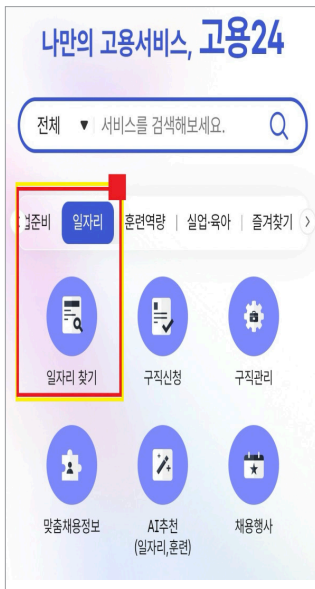
- 채용정보-일자리찾기-채용정보 상세검색 ⇒ 검색어(희망직종) ⇒ 지역선택 ⇒ 고용24입사지원 체크 ⇒ 검색
- 고용24 입사지원 가능 목록 확인 ⇒ 모집공고 클릭 ⇒ 고용24 입사지원(파란버튼)

고용24 입사지원하기_일자리 찾기



일자리찾기(앱-핸드폰)

- 일자리-일자리찾기 ⇒ 채용정보 상세검색 ⇒ 상세 클릭 ⇒ 검색어(희망직종) 입력 ⇒ 지역선택 ⇒ 추가 검색조건 열기 : 고용24입사지원 가능 체크 ⇒ 검색
- 모집공고문 클릭 ⇒ 고용24 입사지원(파란버튼)



고용24 입사지원하기_알선/입사지원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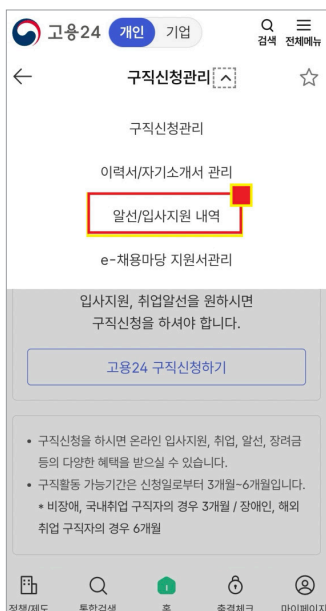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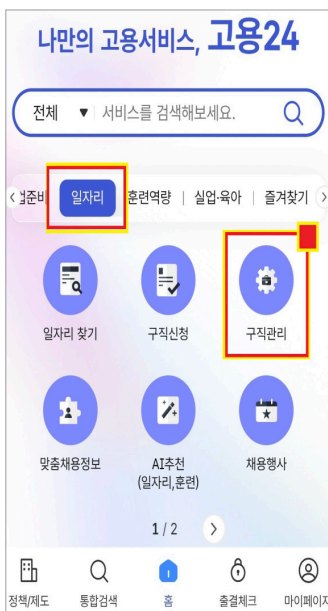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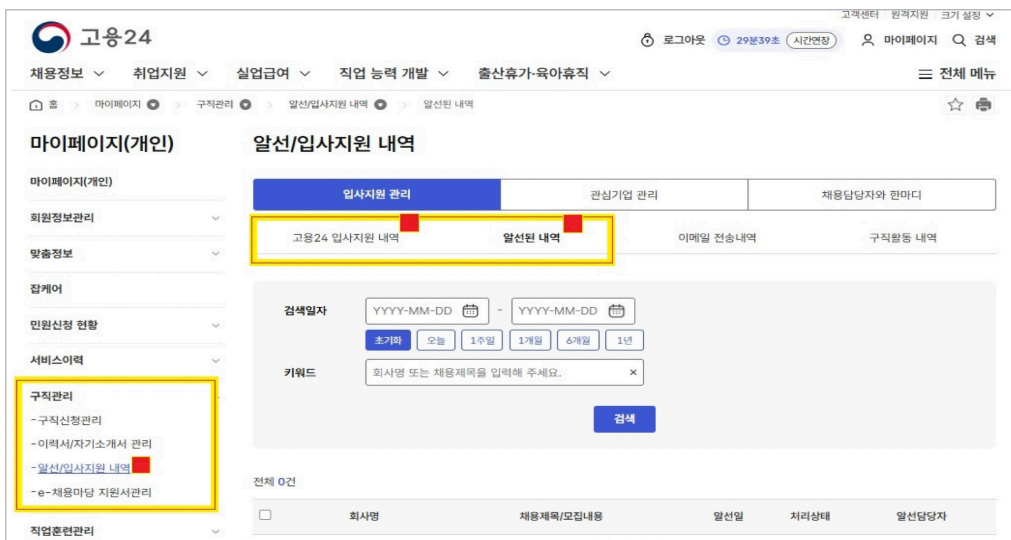


알선/입사지원내역 : 마이페이지 ⇒ 구직관리

✔ **고용24 입사지원 내역** : 고용24로 직접 입사지원한 내역(건수) 확인 가능

✔ **알선된 내역** : 알선받은 구인정보(알선전담팀, 담당자, 구청 등) 확인 가능

※ 모집공고 제목 클릭 ⇒ 하단 '고용24 입사지원'클릭 ⇒ 내 이력서 체크, 입사지원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제도

프로그램명	지원기관 및 내용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영구임대주택 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주거비 등 제공
	(문의) 시·군·구청, 지역별 (주택)도시공사(SH ☎1600-3456), LH마이홈(☎1600-100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문의)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또는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	법률상담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 종합 지원센터(☎132, resu.klac.or.kr)
소상공인지원 (용자)	상시근로자 5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의 점포 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정책자금 대출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www.semas.or.kr)
위기가족 지원	위기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 청소년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 www.familynet.or.kr)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지원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폭력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서비스 제공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의료 지원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등
	(문의) 지자체 산하 의료원, 국립·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사회공헌부서

더 많은 구체적인 복지 정보가 필요하면 「내손안의 복지머니」,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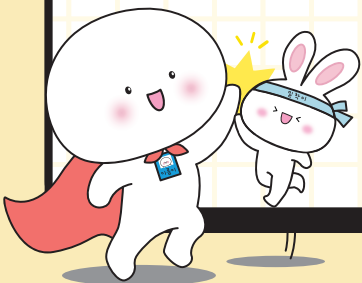
취업지원 관련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주소
종합 취업정보	고용24	www.work.go.kr
	잡코리아	www.jobkorea.co.kr
	인쿠르트	www.incruit.com
	사람인	www.saramin.co.kr
	사랑방잡	job.sarangbang.com
아르바이트	알바몬	www.albamon.com
	알바천국	www.alba.co.kr
해외취업	월드잡	www.worldjob.or.kr
	피플앤잡	www.peoplenjob.com
	슈퍼루키	www.superookie.com
공공기관	나라이터	www.gojobs.go.kr
	잡알리오	job.alio.go.kr
	클린아이 잡플러스	job.cleaneye.go.kr
이공계특화	이엔지잡	www.engjob.co.kr
교육 및 강사	훈장마을	www.hunjang.com
	잡티처	www.jobteacher.co.kr
IT분야(스타트업)	로켓펀치	www.rocketpunch.com
NCS	국가직무 능력표준	www.ncs.go.kr
대기업 취업준비 커뮤니티	위포트	www.weport.co.kr
	잡이룸	www.joberum.com
취업지원 및 무료강좌	사이버진로교육센터	www.work.go.kr/cyberedu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www.lifelongedu.go.kr

취업지원 관련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주소
복지분야	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
보육분야	보육교사	boyuk.guinnet.com
방송분야	미디어잡	www.mediajob.co.kr
디자인분야	디자인잡	designjob.co.kr
판매유통분야	샵마넷	www.shopma.net
건설분야	기술잡	www.gisuljob.co.kr
	올드라이버잡(운전)	www.aldriverjob.co.kr
	건설 워커	www.worker.co.kr
	콘잡	www.conjob.co.kr
의료분야	메디플	www.mediple.kr
	넬스잡	www.nursejob.co.kr
	메디잡	www.medijob.cc
	메디컬잡	www.medicaljob.co.kr
창업지원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www.iljarahub.or.kr
	K-startup 창업지원포털	www.k-startup.go.kr

MEMO



MEMO



MEMO





국민취업 지원제도